옥천군 공고 제2019 - 423호

옥천군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옥천군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4월 3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

2. 제정이유

○ 주민에게 제공한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주민이 철회 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리콜 제도를 마련하고 그 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주민의 의견이 군정운영에 적극 반영되어 주민참여도 및 정책에 대한 호응도를 증진시키기 위함.

3. 주요골자

○ 리콜 청구권 및 리콜대상 규정(안 제3조 및 제4조)

○ 청구인서명부의 공람, 이의신청, 보정 등(안 제6조)

○ 리콜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9조)

○ 위원회의 운영(안 제12조)

○ 리콜 여부의 결정(안 제13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5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종합민원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TEL : (043)730-3121,3122 FAX : (043)731-2488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5. 붙임

○ 옥천군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조례 제 호

옥천군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이 주민에게 제공한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주민이 철회 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리콜제도를 마련하고 그 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이 군정운영에 반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서비스”란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행하는 사업중 주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말한다.
2. “리콜”이란 일정 수의 주민의 청구에 의해 군수가 해당 사업을 철회하거나 시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리콜 청구권) ①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은 리콜 청구권이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한한다.

② 리콜 청구권자의 연령계산은 제5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제4조(리콜대상) ① 리콜 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개발사업과 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치 또는 건설

2. 각종 문화예술·관광·스포츠 행사

3. 그 밖에 다수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리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권익의 구제절차가 규정된 사항

2. 군의 예산·회계·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3.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정원·보수 등 행정내부에 관한 사항

4. 이 조례에 따라 리콜을 청구한 적이 있는 사항

제5조(리콜의 청구) ① 주민이 리콜 청구를 위해서는 청구인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하며, 청구권자 100인 이상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② 서명요청권이 있는 자는 대표자 및 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로 하며, 서명요청기간은 제4항의 대표자 증명서 교부사실의 공표일로부터 10일간으로 한다.

③ 대표자는 리콜 청구서와 청구인 서명부를 제2항의 서명요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자 선정과 증명서 교부 및 공표, 서명 요청권 위임, 기타 청구절차와 서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청구인서명부의 공람, 이의신청, 보정 등) ① 군수는 제출된 청구인 서명부를 리콜청구서 사본과 함께 7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시켜야 하며, 청구인 서명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람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공람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과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5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청구인 서명부의 서명이 무효로 판명되어 제5조제1항의 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이를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하게 할 수 있다.

④ 공람, 이의신청, 보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청구의 각하) 군수는 제5조제3항에 따른 리콜청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각하하고 대표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며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유효한 서명의 총수가 제5조제1항의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2. 리콜청구서와 청구인 서명부가 제5조제3항의 제출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경우

1. 제6조제3항에 따른 보정을 지정하는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2. 그 밖에 이 조례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구 요건을 결하는 경우

제8조(심사 요청)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리콜의 청구를 접수한 후 요건

등이 적합하다고 확인한 때에는 리콜청구서와 청구인 서명부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9조에 따른 옥천군 행정서비스리콜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제9조(리콜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행정서비스 리콜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옥천군 행정서비스리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

1. 리콜 청구 내용에 대한 인용 또는 기각

2.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선출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사회단체 대표·대학교수·변호사 또는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3. 군 소관부서 담당공무원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 의회 의원은 그 의원의 임기 내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 되지 아니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군수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 회의일시·장소 및 상정할 내용을 각 위원에게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부의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과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로 부의된 안건에 관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 또는 친족과 관련된 사항

2. 위원이 군 의회 의원인 경우 출신 지역 선거구에 관한 사항

3. 위원이 군 소관부서 담당공무원인 경우 그가 소속된 부서의 업무에 관한 사항

4. 기타 공정한 심사·결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항

⑦ 위원회는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리콜 여부의 결정) 군수는 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의 리콜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참고인에 대하여는 「옥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옥천군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 례 안	의　　견